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김기대 의원 외 16명

나. 의안번호 : 제2564호

다. 발의일자 : 2021. 08. 10

라. 회부일자 : 2021. 08. 18

2. 제 안 사 유

- 현재 지하철, 도로, 하수도 공사 등 공사구역내 원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지장 상수도관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닌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이설하고 있으며, 상수도 분야의 경험이 부족한 원인자가 이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라 시공 중 잦은 누수, 수질사고 발생 및 자재방치, 세척 불량 등 공사 품질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- 그리고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기 위한 시설물 이설비용 (설계비, 시공비, 감리비, 기타 부대비용 등) 항목 추가(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).
- 나.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 법령: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 토 의 견

가. 개요

○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초래 등을 방지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한 이설비용 항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○ 「수도법」제71조에 따르면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서는 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징수방법은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.

「수도법」

제71조(원인자부담금)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(주택단지·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자에게 그 수도공사·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「수도법 시행령」

제65조(원인자부담금)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(주택단지·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)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.

- ② ~ ⑤ (생 략)
-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<u>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</u> 정한다.

 한편, 지하철, 도로, 하수도 등 다른 공사로 인해 이미 설치된 상수도 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공사구역 내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지만, 원인자의 전문성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해 누수 및 수질사고, 인명피해 등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고위험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.

<최근 5년간 서울시 상수도 이설공사 현황>

항 목	총 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비고
건 수	47건	3건	11건	10건	5건	18건	준공기준
이설연장(m)	15,035	458	3,249	961	2,566	7,801	추진사항

<서울시 상수도 이설공사 주요 사고 현황>



- 따라서 외부 원인 제공으로 이설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이설공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상수도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차질 없는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, 안 제3조제2항제10호와 같이 원인자에게 시설물 이설 등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직접 공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,
 해당 지역에서 원인자나 관련 이해관계자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
 공사 지연과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